제86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자료의 제출(신설) ○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▶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	1.비중요
2	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(신설) ○ 은행별 대출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○ 은행 가계대출금리 공시에 개인신용평가회사(이하 'CB사')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를 추가 ▶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,제70조의6	1.비중요
3	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(환경부)	1.처리지원금의 단가(신설) ○ 1회용 컵의 처리지원금 단가 규정 ※ 표준용기 개당 4원, 비표준용기 개당 10원 ▶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3조	1.비중요
4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폐기물 법정교육 강화(강화) ○ 사업장폐기물 배출자, 수집운반업자,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최초 교육시기 단축 강하 및 교육주기 명확화 ▶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(강화) ○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력을 1톤에서 2톤으로 강화 ▶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3.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(강화) ○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'환경부장관이 고시'하는 바에 따라 선별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시설의 설치 의무화(시행규칙 [별표 9]) ○ 주기적으로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·보관토록 의무화(시행규칙 [별표 11]) ▶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,제42조	
5	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(신설) ○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- 사립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기준 설정 ▶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	1.중요
6	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기준(강화) ○ 특급평가자 중 교통기술사 또는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,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등 규정 ▶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 기간(신설) ○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사유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재인가 제한 기간 설정 ▶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	1.비중요
8	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긴급정산상한가격 규정 신설(신설) ○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상황 시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,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등 ▶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	1.중요
9	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력요금 산정시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규정 신설(신설) ○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제도 개선에 따른 가격제도 변화를 관련 전력거래가격에 반영 ▶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	1.중요
10	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소방청)	1.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 작성 및 통보(강화) ○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2.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(신설) ○ 건축물의 규모, 용도 및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및 1인의 기술인력이 하루 동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를 제한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 8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사항 확대(강화) ○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게시 사항 추가 * 화재 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의 위치 정보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4.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신고(신설) ○ 선임신고 기한,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선임신고 기준 마련 등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.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(강화) ○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6.소방안전관리자등의 교육(강화) ○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목 및 시간 확대 * 특급(80→160시간), 1급(40→80시간), 2급(32→40시간) ○ 실무교육의 과목, 시간 및 운영방법 개선 * 실무교육 시 실습 및 인증을 통한 실무교육 방법 개선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,제31조 7.화재예방안전진단 방법 및 평가(신설) ○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-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(위험요인조사→위험성 평가 → 위험성감소대책 수립) 및 방법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 제출 - 진단기관은 진단결과를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(관계인에게도 통보)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,제43조 8.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(신설) O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- 진단기관의 지정절차(지정신청 → 지정심사 → 지정여부 결정) 및 검토사항(사업수행계획, 재정적 능력 등)을 규정 O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- 지정 시(지정서 교부 → 공고), 취소 시(인터넷 홈페이지 게시) *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: 별표6 참조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,제46조	
11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금차입 신고의 방법(신설) O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, 차입일, 차입금액, 이자율,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7조의2 2.제안금지 세부 범위(신설) O (이주비 등 제안 금지)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, 이주비 등 금전, 재산상이익을 무상 제공하거나, 저금리,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안 금지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시공 외 제안 금지) 재건축부담금 대납, 임대주택 인수 절차· 방법·가격, 분양가상한제 등의 위법한 적용에 관한 제안 등 금지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3.건설업자의 허위·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(신설) ○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등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·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, 사실을 은폐·축소하는 행위를 금지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3 4.입찰참가제한 기준(신설) ○ 시공 외 제안을 한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및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규정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의2,제89조의3	